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86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소득월액 산정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일시금 중 소득 공제받은 금액 제외	3

I. 개요

1.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86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13.

(3) 회 부 일 : 2026. 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임.

그런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장기간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돼 건강보험료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납입한 부금(소득공제받은 금액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돌려받은 부금 일부(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동일 재원에 건강보험료를 이중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도입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소득월액 산정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일시금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 제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¹⁾에 따른 기타소득(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제외한 금액)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소득월액) ① ~ ③ (생략) <u><신설></u>	제71조(소득월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 산정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시행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1. 계산식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2. 해지사유

가.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나. 검토의견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이른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적립하여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²⁾, 가입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표자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재난, 질병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며³⁾,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³⁴⁾에서는 공제부금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

②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산(법인만을 말한다)한 경우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4.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업장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가.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대하여 연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개요 >

1. 제도 개요

- 목 적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2007.9월 사업 개시
- 법정명칭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브랜드명 : 노란우산)
- 제도운영 : 중소기업중앙회
- 가입자수 : 약 185.5만명 (2025.12월 기준)
- 재적부금 : 약 32.1조 (2025.12월 기준)

2. 주요 연혁

- '07. 9. 노란우산 출범
- '17. 1. 소득공제 한도 확대(300만원→ 200~500만원)
- '18. 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 '25. 1. 소득공제한도 확대(최대 500 → 600만원)
- '25. 2. 소득공제한도 구간(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신설
- '25. 7. 장기가입자 경영악화 사유 해약 시 퇴직소득세 과세

3. 주요특징

-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분할지급 가능)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제293조의5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4.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 공제부금은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 >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공제금 수급권 보호 (압류, 양도, 담보 금지)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 적용

구 분	이자지급(연복리) * '25.4분기
폐업·사망	3.3% (기준이율+0.3%)
퇴임(질병·부상), 노령(60세 이상&10년납) (<u>'24.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희생·파산</u>)	3.0% (기준이율)

- 부금 내 대출(공제계약대출) 운영

- 단체상해보험, 심리상담, 재기교육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전국 17개 지자체 장려금 지급(연 12만원 ~ 36만원)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5)에서 공제금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법 제86조의3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6)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월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사유 발생에 따라 지급받은 공제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⁷⁾

□ 그러나 공제사유가 미발생한 상태에서 중도에 임의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8)에서 납입월수가 120개

- 6)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times 1/12$$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 7) 보건복지부는 퇴직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2014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퇴직소득의 경우 일회성 소득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부과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8)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1. 계산식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2. 해지사유
가.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⑤ 법 제86조의3 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공제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이 항에서 “기준과세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한다) 이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준과세연도 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익금의 총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총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그 전전 과세연도의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지로 인한 환급일시금(이하 “해지일시금”)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공제부금과 공제부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소득월액 산정 시 기타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지일시금 중 기존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공제부금과 공제부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⁹⁾).

□ 개정안은 해지일시금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개정안과 같이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대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정안과 같이 동 금액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준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이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⑥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나목에서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5. 공제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⑫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9) 해지일시금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소득세법」은 소득공제에 대한 세제 혜택 환수를 위해 해지일 시금 중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공제부금은 이미 소득공제를 받을 당시 사업소득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음에도 해지일시금을 받을 때 기타소득으로서 다시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지적¹⁰⁾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이중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았던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¹¹⁾.
- 참고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임의해지로 인한 기타소득 발생 건수는 2021년 약 3만건에서 2024년 약 7만건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임의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추정액도 약 83억원에서 약 278억원으로 증가하였음.

10) 중소기업뉴스, 노란우산 중도해지 환급금에 부과되는 ‘건보료 폭탄’ 개선되나, 2026.3.3.
<https://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565>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노란우산을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 부금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이미 소득공제를 통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됐던 금액이 다시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면서 ‘이중부과’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1) 중소기업중앙회 의견 참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임의해지로 인한 기타소득 발생 현황 및
건강보험료 부과 추정액 >**

귀속연도	기타소득 발생건수 (건)	기타소득 (억원)	건강보험료 추정액 (억원)
2021	30,110	1,165.7	83.2
2022	43,395	1,894.6	134.3
2023	70,451	3,668	260.1
2024	68,805	3,881.4	278.4

* 건강보험료 추정식 : 총 기타소득 × 부과시점 보험료율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교직원공제나 과학기술인공제 등 다른 공제 해지금의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¹²⁾¹³⁾

- 12) 공제부금의 이자 등에 대해서는 공제상품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먼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이자 등)은 이자소득으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나 해당 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분리과세되는데, 공단은 국제청자료 미연계, 금융시장 영향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은 일부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임.
그 밖에 공제부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으로서 가입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소득세법 시행령」
-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거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 13) 한편, 공적 연금의 해지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연금저축(신탁·보험·펀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

□ 반면,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 납입시점에 발생한 소득과 해지일시금 수령시점에 발생한 소득은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한 별개의 소득으로, 해지일시금은 새로운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¹⁴⁾.
- 또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해당 재원으로 공적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¹⁵⁾

□ 한편, 법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71조제3항¹⁶⁾에서 소득월액 산정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해지일시금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체계상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¹⁷⁾에 따른

어야 하나 공단은 국세청 자료 미연계, 금융시장 영향 등을 이유로 일부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14) 보건복지부 의견 참고

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사적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으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나,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미흡, 일시금 형태의 연금수령 조장 등을 사유로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임.

16)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타소득, 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019호, 2024.8.2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019호, 2024.8.2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해지일시금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설명¹⁸⁾이었으나, 2026년 8월 현재 보건복지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고 현재도 부과 중이라는 설명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①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종도 가입 가능하다는 점,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는 일시적 경영악화 사유로 해지 시 건강보험료 미부과 대상(종합소득 제외)이라는 점, ③ 기재부 ‘2025 세제개편안’에서 일시적 경영 악화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매출액 50%→20% 이상 감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변심 등 그 밖의 사유로 임의해지 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예외를 신

17)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019호, 2024.8.2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p.10

설하는 것은 공정성·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과세소득 판단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과세체계와 별개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 부과 성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의 납부능력 판단 시 각종 비과세 소득, 이전소득(예: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정부지원금), 부채(예: 대출 이자) 등 실제 소득·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으로만 간주·정의해 판단 중으로, 노란우산공제 납입시점에 발생한 종합소득과 해지일시금 수령시점에 발생한 종합소득은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한 별개의 소득으로, 후자의 소득은 종전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별개의 소득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임의해지는 가입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해지 외에도 가입자의 다양한 해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최근 일시적 경영위기에도 중간정산 혹은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노란우산공제가 개선되어 경영상황 악화로 임의해지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건강보험은 1년 단위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단기보험으로서, 특정 계층·직종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곧 다른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므로,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임의해지를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배제해야 할 명확한 필요성과 기준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취지는 공감하나, 단순변심 등 그 밖의 사유로 임의해지 하는 경우 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공정성·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중소기업중앙회

- 현행 소득세법상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 대한 기타소득 규정은 소득공제 혜택 환수를 위한 과세 장치일 뿐,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은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해지일시금 중 납입한 원금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수령 시 새롭게 발생한 소득이 아님.
- 또한, 노란우산 가입기간 동안 납입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 산출 후 적용되는데, 건강보험료 부과는 가입자가 적용받은 소득공제와 무관하게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부과되므로, 해지일시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함.
-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 시와 연금외 수령시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를 제외하고 있어,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문 의 처
02)6788-5503